◈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-163호

정비구역등 해제 및 지형도면 고시
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제21조 제1항 제2호 및「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」제4조의3 제3항에 따라 추진상황으로 보아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정비구역등에 대하여 같은법 제21조 제2항에 따라 해제 고시하고,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
2018년 5월 24일
서 울 특 별 시 장

1. 재정비촉진구역 해제 : 1개 구역
가. 「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」제4조의3 제3항 제4호

<table>
<tr><th>연번</th><th>구역해제 현황</th></tr>
<tr><td>1</td><td>
□ 재정비촉진구역 변경(해제)
<table>
<tr><th>구분</th><th>구 역 명</th><th>위 치</th><th>사업방식</th><th>면 적(㎡)</th><th>재정비촉진구역지정일
(고시번호)</th></tr>
<tr><td>기정</td><td>장위15
재정비촉진구역</td><td>성북구 장위동
233-42 일대</td><td>주택재개발
사업</td><td>189,450</td><td>2010.4.22.
(서고시2010-142호)</td></tr>
<tr><td>변경</td><td colspan="5">해 제</td></tr>
</table>
□ 재정비촉진계획 변경(해제)
○ 용도지역·지구(구역지정 이전상태로 환원)
○ 토지이용계획 : 폐지(구역지정 이전상태로 환원)
<table>
<tr><th>결정
구분</th><th colspan="2">구 분</th><th>면적(㎡)</th><th>구성비(%)</th><th>비고</th></tr>
<tr><td rowspan="10">기정</td><td colspan="2">합계</td><td>189,450</td><td>100.0</td><td>-</td></tr>
<tr><td rowspan="7">정비기반
시설 등</td><td>소계</td><td>63,237</td><td>33.4</td><td rowspan="2">-</td></tr>
<tr><td>도로</td><td>21,509</td><td>11.4</td></tr>
<tr><td>공원</td><td>27,802</td><td>14.7</td><td></td></tr>
<tr><td>녹지</td><td>4,324</td><td>2.3</td><td></td></tr>
<tr><td>학교</td><td>7,652</td><td>4.0</td><td></td></tr>
<tr><td>문화시설</td><td>1,950</td><td>1.0</td><td></td></tr>
<tr><td rowspan="2">택지</td><td>소계</td><td>126,213</td><td>66.6</td><td>-</td></tr>
<tr><td>택지1~9</td><td>126,213</td><td>66.6</td><td>공동주택 및 종교부지</td></tr>
<tr><td>변경</td><td colspan="5">재정비촉진구역 해제에 따른 폐지</td></tr>
</table>
</td></tr>
</table>

연번	구역해제 현황
1	○ 건축시설계획(폐지)

결정구분	구역		가구 또는 획지 구분		위치	주된용도	건폐율(%)	용적률(%)	층 수	비고
	명칭	면적(㎡)	명칭	연면적(㎡)						
기정	장위15 재정비촉진구역	189,450	택지	282,717	장위동 252-4일대	공동주택 및 부대복지시설	60 이하	236 이하	평균19층 최고33층	-
변경	재정비촉진구역 해제에 따른 폐지									

※ 『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』 제22조 제1항에 따라 정비구역등이 해제된 경우에는 정비계획으로 변경된 용도지역, 정비기반시설 등은 정비구역 지정 이전의 상태로 환원

※ 『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』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관계 법률에 따라 재정비 촉진구역 지정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에는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의 효력 상실

2. 주택재건축 정비구역등 해제 : 1개 구역

가. 「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」 제4조의3 제3항 제4호

연번	구역해제 현황
1	□ 정비예정구역 변경(해제)

구분	구역번호	동명	지번	면적(ha)	계획용적률	건폐율	층수	추진단계	주택유형	예정구역지정일
기정	6	정릉동	150-27	1.1	300	50	-	-	단독	2006.3.23. (서고시 제2006-95호)
변경	해 제									

□ 정비구역 변경(해제)

구분	구 역 명	위 치	사업방식	면 적(㎡)	정비구역지정일(고시번호)
기정	정릉1 주택재건축구역	성북구 정릉동 150-27 일대	주택재건축	11,195	2008.12.04. (서고시 제2008-437호)
변경	해 제				

연번	구역해제 현황
1	□ 정비계획 변경(해제) ○ 용도지역·지구(구역지정 이전상태로 환원) ○ 토지이용계획 : 폐지(구역지정 이전상태로 환원)

결정 구분	구 분		면적(㎡)	구성비(%)	비고
기정	합 계		11,195.00	100.0	
	정비기반 시 설	소 계	2,325.68	20.77	
		도 로	1,704.95	15.23	
		소공원	504,16.00	4.50	
		쌈지형공지	116.57	1.04	
	택 지 (획지)	소 계	8,869.32	79.23	
		획지1	8,869.32	79.23	
변경	정비구역 해제에 따른 폐지				

○ 건축시설계획(폐지)

결정 구분	구역		가구 또는 획지 구분		위치	주된용도	건폐율 (%)	용적률 (%)	높이(m) 층수	비고
	명칭	면적 (㎡)	명칭	면적(㎡)						
기정	정릉1주택재 건축구역	11,195	획지1 (공동 주택)	8,869.32	정릉동 150-27	공동주택 및 판매시설	50이하	393%	최고20층 75m이하	
변경	정비구역 해제에 따른 폐지									

※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22조 제1항에 따라 정비구역등이 해제된 경우에는 정비계획으로 변경된 용도지역, 정비기반시설 등은 정비구역 지정 이전의 상태로 환원

4. 지형도면(해제) : 첨부 도면과 같음

5. 구역 지정의 실효 사유와 실효일
   ○ 실효사유 :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4조의3에 의한 정비구역등 해제
   ○ 실 효 일 : 고시일

6.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고시 관련 세부내용은 서울특별시 도시재생본부 주거사업과와 성북구 주거정비과에 관계도서를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습니다.

붙임

정비구역 해제 도면

□ 장위15 재정비촉진구역

○ 위치도

○ 정비계획결정도(해제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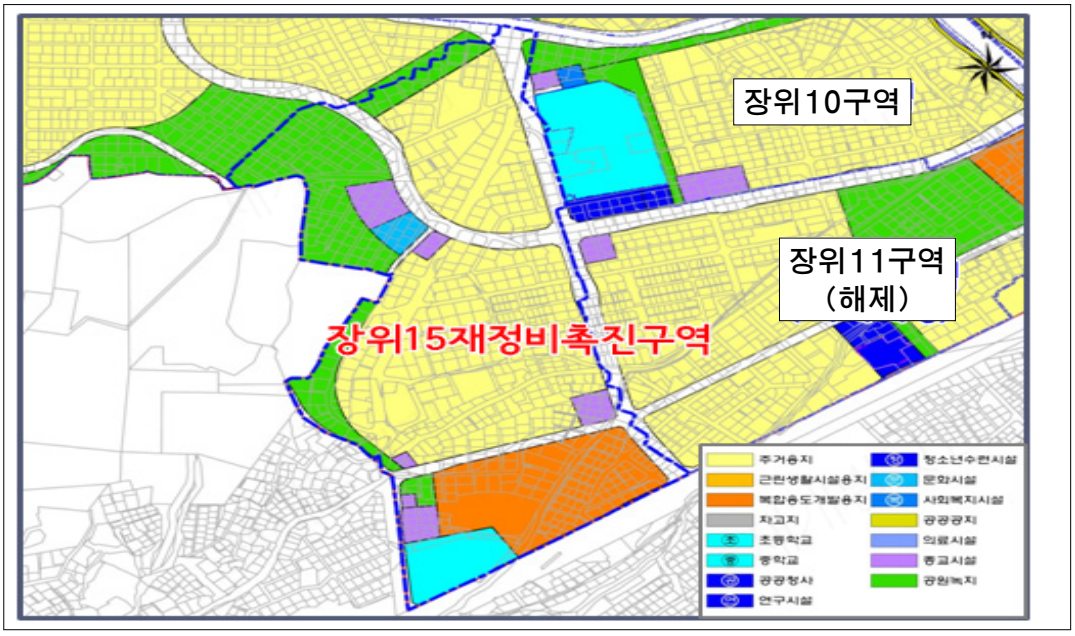

□ 정릉1 주택재건축 정비구역

○ 위치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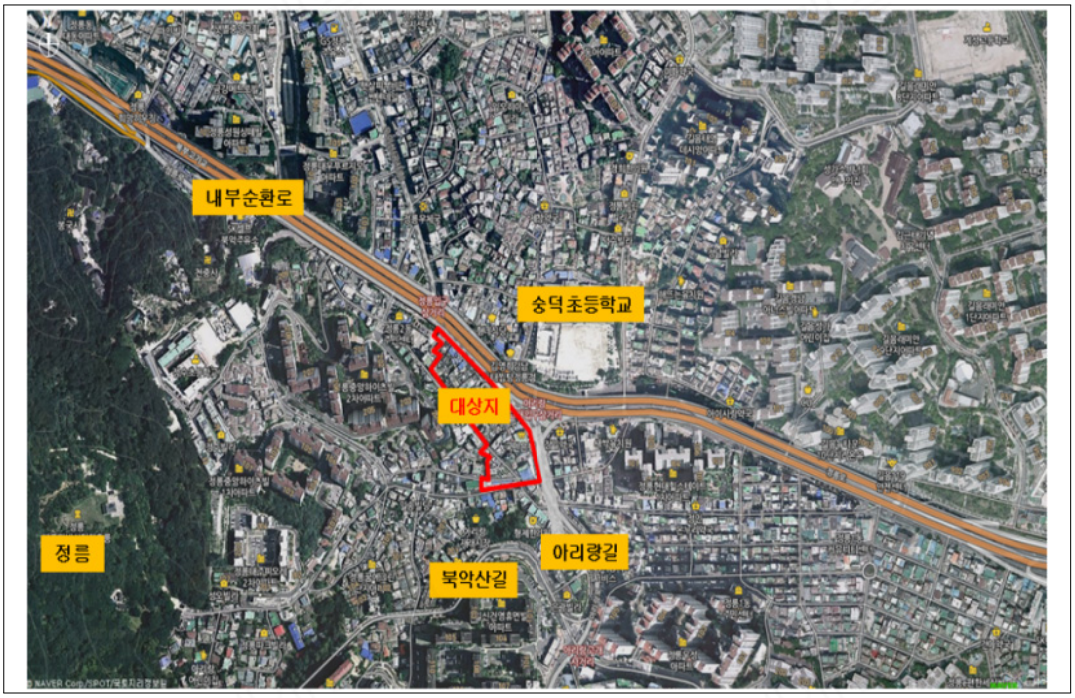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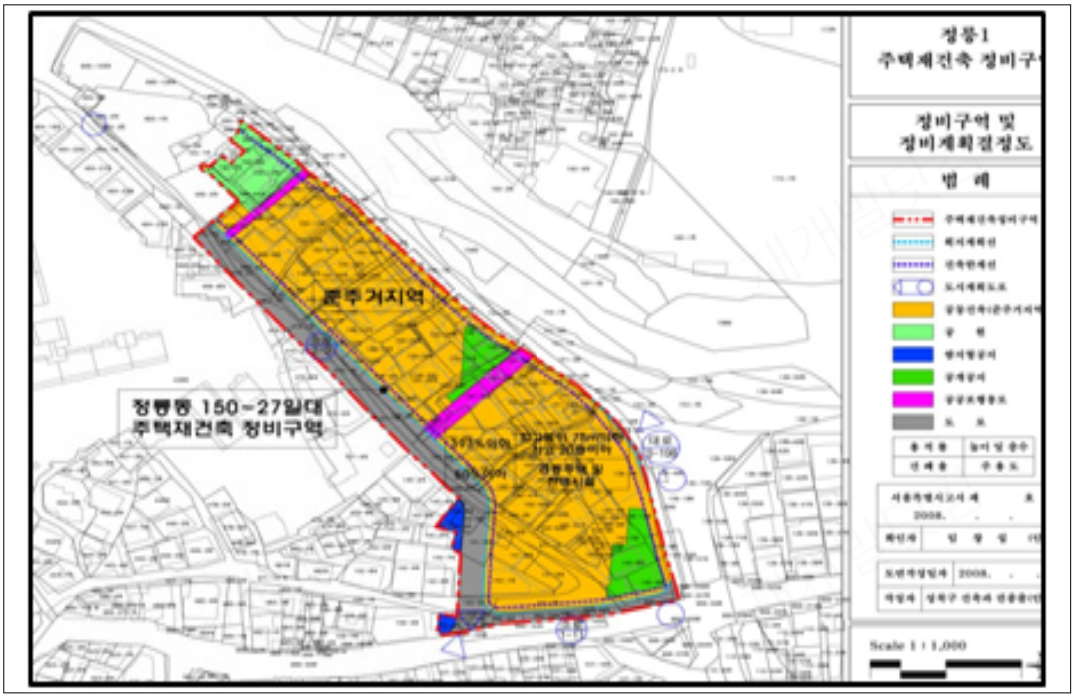
○ 정비계획결정도(해제)